



## 새 법령

new laws  
and  
ordinances



###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시행 2018. 8. 7.] [대통령령 제29079호, 2018. 8. 7.,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 기업 또는 기업집단에 대한 지나친 여신(與信) 편중을 제한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일한 개인·법인이나 그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한국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50으로,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한국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40으로 각각 축소하려는 것임.

####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시행 2018. 8. 7.] [대통령령 제29080호, 2018. 8. 7.,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사원이 중징계를 요구한 사건으로서 감사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할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감사원 소속 공무원이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 및 징계부가금 심의·의결 과정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등을 비공개 사항으로 정하며, 적극행정의 경우 징계감면을 받을 수 있음을 출석통지서를 통하여 안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8. 8. 7.] [대통령령 제29084호, 2018. 8. 7.,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 이후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이루어진 전매행위에 대해서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처벌이 곤란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해당 기간에 투기 목적의 전매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하도록 하려는 것임.

####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방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8. 8. 10.] [대통령령 제29082호, 2018. 8. 7.,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365호, 2018. 2. 9. 공포, 8. 10. 시행)됨에 따라,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대상인 공동주택을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로 정하고,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방법과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서의 방해행위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8. 8. 22.] [대통령령 제29089호, 2018. 8. 7.,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사정서를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내어 주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법률 제15414호, 2018. 2. 21. 공포, 8. 22. 시행)됨에 따라, 서면,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도록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내어 주는 손해사정서에 피보험자의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 2.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8. 8. 10.] [대통령령 제29081호, 2018. 8. 7.,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 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정차 및 주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을 정차 및 주차의 금지구역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5364호, 2018. 2. 9. 공포, 8. 10. 시행)됨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 분무 소화설비 등의 송수구 및 소화용수설비 등의 시설을 정차 및 주차금지구역 설정의 기준이 되는 소방시설로 정하려는 것임.

#### 2.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8. 8. 7.] [대통령령 제29085호, 2018. 8. 7.,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 등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를 위하여 도심·역세권 등 주거수요가 높은 지역에 위치한 노후 공공청사 등을 개발하는 경우 개발 면적의 일부에 공공주택을 건설·운영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공공주택사업자에 추가하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으로 개발하는 사업 또는 관리·처분을

위탁받은 일반재산의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공공주택사업을 전체 개발사업 면적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18. 8. 7.] [대통령령 제29078호, 2018. 8. 7.,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바, 최근 부진한 소비심리 등에 대응하여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현행보다 30퍼센트 인하함으로써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법보좌관규칙

[시행 2018. 8. 3.] [대법원규칙 제2798호, 2018. 8. 3.,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사법보좌관 업무 중 가정법원 재판영역(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신고의 수리와 한

정승인취소·포기취소 신고의 수리절차에  
서의 가정법원의 사무)에서의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불복 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사소송법」 제43조에 따른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처  
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함(제4조제3항)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8. 3.] [대법원규칙 제2797  
호, 2018. 8. 3.,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출산을 장려하고 남녀 공무원의 육아참  
여 확대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기 위  
하여, 종전에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  
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최초 3개  
월 동안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  
을 자녀별로 차등(첫째 150만원, 둘째 이후  
200만원)하여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모  
든 자녀에 대하여 월 200만원으로 동일하  
게 적용하는 것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9030호, 2018.  
7. 3.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육아휴직수  
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  
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최초 3개월 동안 지  
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을 모든 자  
녀에 대하여 월 2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  
용함(제10조의2제2항)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18. 8. 1.] [보건복지부령 제  
586호, 2018. 8. 1.,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양압기는 요양비 지급 대상  
이 아니던 것을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양압  
기를 대여 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요양비  
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활동형·틸딩형·리  
클라이닐형 수동휠체어가 장애인보장구로  
새로이 인정됨에 따라, 활동형·틸딩형·리  
클라이닐형 수동휠체어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휠체어의 처방을  
위해 실시한 검사 결과에 관한 서류를 제출  
하도록 하고, 수동휠체어는 공단에 등록된  
품목만을 의료급여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8. 1.] [기획재정부령 제 687호, 2018. 8. 1.,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가 위탁된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무상귀속 협의에 관한 사무를 종전에는 조달청장에게 위임하였으나 앞으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함으로써 해당 일반재산에 관한 사무를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8. 8. 22.] [대통령령 제29069호, 2018. 7. 31.,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부문에서 추진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이 민간 영역을 과도하게 침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이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371호, 2018. 2. 21. 공포, 8. 22. 시행)됨에 따라, 국가기관 등의 장은 민간 소프트웨어와의 유사성, 민간 시장 침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영향평가 결과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18. 7. 31.] [대통령령 제29067호, 2018. 7. 31.,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으로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의 분류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금융 및 보험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자회사로부터의 수입 배당금액의 일부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자회사의 요건을 정비하려는 것임.

####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 2018. 8. 1.] [대통령령 제29073호, 2018. 7. 31.,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만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건설공사의 사업장 등에서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를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20일 이상일 것으로 운영하던 것을, 앞으로는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8. 7. 31.] [대통령령 제29068호, 2018. 7. 31.,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약학(藥學) 관련 교육의 전문성 및 대학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 2+4년제 교육과정(다른 학교,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기초·소양 교육과정 2년을 이수하고, 약학대학에서 전공 교육과정 4년을 이수하는 교육과정) 외에 통합 6년제 교육과정(약학대학에서 기초·소양 및 전공 교육과정 6년을 모두 이수하는 교육과정)을 추가하고, 2022학년도부터는 2가지 교육과정 중에서 대학이 하나를 선택하여 약학대학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신체적·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취약계층의 의료인 진출 기회를 확대·보장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학의 장이 정하는 신체적·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학생은 의학·치의

학·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천재지변과 같은 예상치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대학입학 전형 관련 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입학 전형에 관한 기본사항 및 그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에 천재지변 등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7. 23.] [대통령령 제29055호, 2018. 7. 23.,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반부패범죄와 강력범죄의 수사 및 지휘를 단일화하기 위하여 반부패부와 강력부의 기능을 통합하여 반부패·강력부를 신설하고, 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의 보호 및 침해 예방에 관한 업무를 기획·총괄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인권부를 신설하는 한편, 기업범죄 등에 관한 수사역량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 검사와 제4차장검사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사이버범죄와 관련한 검찰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첨단범죄수사제1부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이전하면서 그 명칭을 사이버수사부로 변경하며, 특허 등 기술 유출과 관련한 수사의 전담을 위하여 서울중앙지

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제2부의 명칭을 과학기술범죄수사부로 변경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줄이고 고소·고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형사사건 수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울산지방검찰청 및 창원지방검찰청의 특별수사부를 형사제3부로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허법 시행령**

[시행 2018. 7. 18.] [대통령령 제29050호, 2018. 7. 17.,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장은 특허출원 심사 시 필요한 선행기술의 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한 경우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특허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 및 보안체계를 갖추었다고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국회법**

[시행 2018. 7. 17.] [법률 제15713호, 2018. 7. 17.,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20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을 위한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각각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하고 소관사항을 조정하며, 현행 상설로 구성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1. 18.] [대통령령 제29051호, 2018. 7. 17.,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복지로드맵,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학교 부지 내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 무가 있는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의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에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용적률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는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구

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유휴토지·시설이전지의 면적 요건을 1만제곱미터 이상에서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8. 7. 11.] [고용노동부령 제 224호, 2018. 7. 11.,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중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의 지원금이 폐지됨에 따라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의 요건 및 해당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한국고용직업분류(KECO)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관련 서식에 반영하여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